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2-9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. 9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을 통해 지역상권 상생발전 및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법 시행에서의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마련(안 제2조)
- 다.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제출 서류(안 제3조)
- 라.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(안 제4조)
- 마. 자율상권조합 사원지원의 절차(안 제5조)
- 바. 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(안 제6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, 제9조(조례의 제정), 제19조(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), 제23조(사업의 시행)
- 2)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(지역상생구역의 기준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2. 7. 28. ~ 8. 17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원안 동의
- 4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- 6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 의결 (2022. 9. 1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,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역상생구역의 기준)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”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.

제3조(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「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

1.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
2. 설립인가 신청서
3.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
4.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
5.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

제4조(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) 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이 추진하는 법 제23조제1항의 사업에서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.

1.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

2. 조사·연구비용(자료 작성비, 원고료, 인쇄비, 위탁비 등 경비 일체)
3.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

제5조(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) ① 자율상권조합은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획(이하 “세부 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자율상권조합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사업계획을 1년에 세 차례만 변경할 수 있으며, 각 사업 변경금액이 해당연도 전체 사업비의 5% 이상일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해야 한다.

제6조(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보고)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연도별 사업결과보고서(전자파일을 포함한다) 5부를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이 모두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사업결과보고서(전자파일을 포함한다) 5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본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이후 자율상권구역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(제4조)를 시행할 경우 재정이 수반 가능함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2호

☞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조례에 포함된 지원사업의 경우 재정이 수반되지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,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대상 및 지원범위도 명확하지 않아 필요한 재정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어려움.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지역경제과 조미진
연 락 처	02-3153-8585